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708
----------	------

제출년월일 : 2015.10.15.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정이유

-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연계 강화와 법적 지위 및 근거마련으로 체육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마련과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생활체육진흥법(2015. 3. 27.)

주요내용

- 가.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나. 전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다. 생활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라.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마. 학교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바.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6. 9(화) ~ 6. 29(월) 20일간

제정조례안 : 불임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2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학교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계 법령 발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3

-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 계획 방침결정문

【붙임 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주민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체육진흥기금”이란 안산시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2장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간사 등)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5.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

제18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스포츠산업의 진흥

제20조(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22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 ④ 안산시체육회장은 적립원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의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산시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제27조(기금관리담당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담당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계장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9조(안전관리 계획)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안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3.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소관 실·과		체육진흥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전 덕 주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계장 김 용 선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우 경 (행정 2146)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08
----------	------

제안년월일 : 2015년 10월 29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제안이유

- 기금관리에 있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라 현실에 맞는 기금관리의 내용으로 수정함

주요내용

- 안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을 삭제함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 제4항 및 안 제25조 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4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p> <p>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p> <p>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p><u>④ 안산시체육회장은 적립원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24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p> <p>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p> <p>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p><u>④ 삭제</u></p>
<p>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금운용의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④ 안산시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금운용의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④ 삭제</u></p>